

ISO/TC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: 2010년 8월 26일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.)의 소음진동관련 분야 국제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고, ISO 정회원기관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이하 “기표원”이라 한다.)의 국내간사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학회 시행세칙 제 26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조직) ISO/TC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 필요에 따라 추가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① ISO/TC43 전문위원회

② ISO/TC108 전문위원회

제 3 조 (직무)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표원의 국제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고 수행하며, 그 업무 진행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 전에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(1) 위원회는 최신의 국제 표준기술 동향을 파악하고,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.

(2) 각 위원회는 학회를 대표하여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화 신규 규격을 제안한다.

(3) 각 위원회는 학회를 대표하여 국제 표준화 건에 대한 문서 검토와 투표 및 코멘트를 제시하며, 표준화 문서 검토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제 4 조 (권리 및 임무)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회의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.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5 조 (구성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약간 명과 전문위원을 분야별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각 위원회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④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특정 이해 당사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협의하에 분야별로 전문위원 약간명을 구성하고 기표원에는 조직 구성원 및 변경 내용을 통보한다.

⑤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의 활동실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하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⑥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⑦ 각 위원회 간사는 회의 개최 계획의 수립 및 회의소집에 필요한 절차 수행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6 조 (임기) 각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) 각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제 8 조 (의결)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
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